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·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18개 통·리 증설에 따른 통·리장 18명 증원(안 별표)
 - 당초 : 649개 통·리장(통장 473, 리장 176)
 - 변경 : 667개 통·리장(통장 485, 리장 182)
 - 선산 1, 고아 2, 산동 3, 형곡1동 2, 신평2동 1, 비산 3, 진미 3, 양포 3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통리반 증감에 따른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의 후속 조치로 18개 통·리 증설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649명에서 667명으로 18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이며,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